

중소기업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안건

의안번호	제2013-00호
의결 연월일	2013. 4. (제 00회)

심사
사항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
신설·강화 등 규제 심사안

제출자	공공구매제도과장 김대희
제출연월일	2013. 4.

목 차

I. 규제심사(안) 개요 1

 1. 심사대상 규제 1

II. 규제심사(안) 2

 1. 규제 내용 2

 2. 규제 영향 분석서 4

<붙임>

- ▶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

<참고>

- ▶ 공공구매 제도 개요 12

I . 규제심사(안) 개요

1. 심사대상 규제 : 총 1건

규제 사무명	강화·신설 규제내용
1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	○ 일정금액(23억원) 미만 일반품목(중기간 경쟁품목 외)의 우선구매에 대하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, 1억원이상 2.3억원 미만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구간 설정

II. 규제심사(안)

1. 규제 내용

- 공공구매 시장은 참여제한의 설정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목과 그 외의 일반품목으로 구분 가능
 - * 중기간 경쟁품목 :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구매
 - 중기간 경쟁품목에서는 소기업(소상공인) 우대제도^{*} 운영 등을 지원한 결과 소기업 수주비율이 73.5%
 - * 5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에 수의계약, 2.3억원 미만 입찰참여 소기업에 신용평가 만점(30점) 부여 등
 - 반면 일반품목(중기간 경쟁품목 외)에 대하여는 소기업 우대제도가 없어 소기업 수주비율이 33.1%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
 - 따라서 일반품목에서도 소기업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 필요
 - 이를 위해 1억원 미만의 입찰에 대하여는 소기업(소상공인)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구간 신설
- <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'판로지원법') 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2조의2(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	<p>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경우 :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</p> <p>2.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: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</p> <p>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 참여자가 2 미만인 경우이거나 2 이상의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 의 사유로 유찰(流札)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

2. 규제 영향분석서

① 분석 대상 규제개요

1. 규제 사무명 등	등록번호	2. 구분																			
		신설	○	강화		내용 심사		존속 기한 연장													
○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								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 제도과 ○ 경영판로국장 김흥빈, 공공구매제도과장 김대희, 서기관 심재윤 																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피규제집단) 공공기관 ○ (이해관계자) 공공구매 참여 중소기업 																				
5. 규제 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을 위해 지속되는 사업이므로 존속기한(최대 10년) 미설정 																				
6. 신설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신설) 일정금액(2,3억 원) 미만 일반품목(중기간 경쟁품목 외)의 우선구매에 대하여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, - 1억원 이상 2,3억원 미만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구간 설정 																				
7. 규제체계도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15%;">내 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15%;">주 체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7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 원 미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기업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(유찰시에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)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 원~ 2.3억 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소기업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		내 용	주 체	비 고	1억 원 미만	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(유찰시에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) 	↓			1억 원~ 2.3억 원	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
내 용	주 체	비 고																			
1억 원 미만	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(유찰시에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) 							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						
1억 원~ 2.3억 원	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																			

②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문제의 정의 (배경과 원인)

- 공공구매에서 일반 품목(중기간 경쟁품목 외)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함에 따라 소기업의 수주기회 축소
 - 반면 대기업이 배제되어 있으며, 소기업에 대한 우대제도가 시행 중인 중기간 경쟁품목에서는 소기업의 낙찰률이 73.5%('12년 기준)
 - * 5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에 수의계약, 2.3억원 미만 입찰참여 소기업에 신용평가 만점(30점) 부여 등
- 일반 품목에서 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제4조 제2항에서 도입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 소기업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는 구간 설정 필요
 - * 관로지원법 제4조(구매 증대) ② 공공기관의 장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4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(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따라서 중소기업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는 구간(2.3억원 미만)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1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소기업간 제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구분

< 금액별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>

구분	1억원 미만	1억원 ~ 2.3억원	2.3억원 이상
참여대상	소기업간 제한경쟁	중소기업간 제한경쟁	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

나. 규제의 강화 필요성

- 일반품목에 대한 소기업(소상공인) 우대가 거의 없어 대기업 및 중기업과 경쟁한 결과 공공조달 수주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
 - * 조달청 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결과 일반품목에서 소기업 수주비율은 33% 정도
- 그러나 초기 판로개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필요
- 이에 공공구매에서의 소기업의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금액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할 필요

2.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가. 규제대안의 검토

- 법 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
 - 이에 따라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방법을 소기업(소상공인), 중기업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,
 - 중소기업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소기업(소상공인), 중기업으로 구분하는 방법 외의 구분기준은 없음

< 중기업,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(제조업 기준) >

구분	중소기업	소기업	
		소상공인	
상시근로자수	300인 미만	50인 미만	10인 미만

나.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- 금번 금액구간별 조달계약 체결구간 신설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,
- 구간 신설을 통해 공공구매에서 소기업 구매가 확대되어 중소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
3.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

가. 규제의 적정성

- 공공조달시장은 초기 기업에 대한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
 -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두는 것은 경제적 약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하며,
 - 참여기업이 부족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 평가
 - *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의2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 참여자가 2 미만인 경우이거나 2 이상의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(流札)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함은 불가피하며,
 -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소기업 우선구매 구간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나. 이해관계자 협의

-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
 -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관련 제도 설명회*(12.6.22) 및 공청회** 실시(12.9.5)
 - *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,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134명 참석
 - **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, 협동조합과 단체 및 중소기업 171명 참석
- 공공기관 대상 소기업 우선구매 설문조사 실시(13.3월)
 -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기업 우선 구매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
 - * 설문조사 결과 80%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 하겠다는 응답을 제시
- 관계부처 협의 ('12. 6. 29 ~ '12. 7. 8)
 - 재정부, 법제처, 조달청 및 국토부 의견 제시 및 반영
- 입법예고 ('12. 7. 2 ~ '12. 7. 23)
 - 의견 없음

다. 규제집행의 실효성

- 해당조항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,
 - 금번 중소기업 우선구매 적용구간 신설(안)에 대해서도 특히 소기업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던 바,
 -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불 임

판로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령 제 호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경우 :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

2.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: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

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

참여자가 2 미만인 경우이거나 2 이상의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(流札)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)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체결을 아니할 수 있다.

1.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한 제조 중소기업등이 3 미만인 경우이거나 3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(流札)된 경우

2.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

3.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) 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

4. 특정한 성능, 기술,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

경우,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4(제조 소기업등 지원을 위한 계약방법의 특례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대하여 3 이상의 제조 소기업등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등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제조 소기업등의 추천을 해당 조합에게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합에서 추천하는 제조 소기업등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.

③ 제3항에 따라 제조 소기업 등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횟수 및 납품금액의 연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공공구매 제도 개요

-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·공사·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매에 적용되는 제도를 총칭

□ 적용법령

- 공공구매의 절차, 계약의 방법, 대금지급 방법 등 일반적 내용은 국가계약법령, 지방계약법령 및 조달사업법령 등에 규정
-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우선하여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적용

□ 그간의 추진실적

- 공공기관에게 일정 비율(50%)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
 - (구매기관) ('08) 163 → ('10) 204 → ('12) 495기관
 - (구매실적) ('08) 61.3(60.7%) → ('10) 66.9(64.1%) → ('12.11) 59.2(67.6%)
 -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^{*} 토록 함으로써,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
 - (구매실적) ('08) 1.7(6.9%) → ('10) 1.4(7.5%) → ('12.11) 1.6조원(8.2%)
- *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(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%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 권고)